의협간행물등록번호
201803-MA394-514

사망진단서 사례집

개정판

발 간 사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사례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의사의 역할은 단순히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국한되지 않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의과학적 소명이 필요한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된 역할 중 진단서의 작성 및 교부는 피해자와 가해자 뿐 아니라 다양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이자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종종 그 내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회원님들의 진단서 작성 및 발급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 1996년도에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2003년과 2015년에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최근 사망진단서 사망원인 표기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의사의 사망진단서 기재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의 사망진단서 작성 오류는 의도치 않은 논란과 어려운 상황을 촉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망진단서 사례집」은 여러 가지 진단서 양식 중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사례별 사망진단서 작성 예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책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단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끝으로 사례집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숭덕 교수님을 비롯한 대한법의학회 사망진단서 사례집 편찬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을 위한 유익한 자료를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대한의사협회

사례집을 발행하며

의료는 고전적으로 법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영역으로 여겨졌고, 의사들의 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충분하지는 않았다. 한편 사회가 발전하고 또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영역에서 의료문서는 공식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문서는 의학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매우 법적인 문서이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사망한다. 이와 관련된 문서는 사회 여러 영역에서 중요하다. 한편 모든 의사는 사람의 사망과 관련된 서류인 '사망진단서'에 대해 동일한 의무를 지고 있다. 사망이라는 과정이 매우 기본적인 것임을 고려할 때 사망진단서의 활용성은 매우 다양함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의료계에서는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교육, 노력이 충분했다고만은 할 수 없다. 의사협회에서는 이에 관심을 가지고 1996년부터 관련 서적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등 사망진단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는 사망진단서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들을 흔히 접할 수 있기도 하다. 다양한, 그리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러 사실들을 교육함에 있어 비슷한 사례를 통한 학습은 교육 대상의 어려움을 낮추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법의학회는 주요 사례들을 모아 의사들이 좀 더 사망진단서를 쉽게 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에서 사망진단서의 질을 높여 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란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고자 하였다. 글을 통해 대상 환자의 모든 사실들을 파악하기 어렵고, 본디 사망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환자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고려할 때 동일한 사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다만 표준적인 설명을 통해 모든 의사들이 사망진단서 발행에 따라 느끼는 어려움을 좀 더 낮추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진단서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로 양해를 얻고자 한다. 끝까지 글을 다듬고, 내용을 검토하고, 또 의견을 나누는데 도움을 준 서울의대 법의학교실의 김문영 선생님, 그리고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김다운, 이지은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8. 3.

대한법의학회 사망진단서 사례집 편찬위원회

사망진단서 사례집을 개정하며

일전에 의협의 도움으로 발간되었던 사례집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손을 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널리 배포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의사들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일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치료’라는 주된 업무보다도 여러 행정적인 일들이 의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의료 현장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신뢰관계이다. 그러나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사소한 오해가 이러한 신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올바른 의료문서의 발행은 의사의 고유한 권한이자 사회에 대한 헌신이기도 하지만, 환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바른 의사-환자 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모든 진단서가 다양하게 활용되지만, 그 가운데 사망진단서의 활용 범위는 특히 넓고,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망진단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임상 경과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그 활용성을 고려한다면 진단서의 질은 더욱 높아져야 한다. 고작 4개의 색인단어만으로 다양한 환자의 상황을 모두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정한 작성 규칙을 바탕으로 환자를 직접 접하는 임상의와 추후에 진단서를 활용하는 전문가들이 꾸준히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 사례집을 개정하면서 환자를 직접 접하는 임상 선생님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활용되는 사망진단서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작업은 본디 대한의학회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이전에 발행된 사례집에서는 이에 대한 소개가 누락되었는데, 늦게나마 알릴 수 있어 다행이다. 첫 사례집의 발행과 더불어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여기에 여러 임상 선생님들이 참여하기까지는 대한의사협회의 추무진 회장님과 김나영 학술이사님, 김금미 공보이사님을 비롯한 여러 이사님들의 조언과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내용을 채워 주신 대한법의학회 사망진단서 사례집 편찬위원회 위원님들과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교정해주신 자문위원단 선생님들,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고 글을 다듬는데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김문영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8. 4.

대한법의학회 사망진단서 사례집 편찬위원회를 대표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이 숭 덕**

대한법의학회 사망진단서 사례집 편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민정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김형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박성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상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이숭덕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이 호

사망진단서 사례집 편찬 자문위원단

서울아산병원 안재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윤 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윤호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종찬

삼성서울병원 이중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은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조영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최창원

신촌세브란스병원 형우진

(이상 가나다 순)

Contents

part I

간단한 사망진단서 작성 원칙

I 간단한 사망진단서 작성 원칙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한 주요 원칙들은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여러 자료들을 통해 전달되었다.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자료로는 2015년 의협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이 있다. 이 자료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료이고 내용 또한 매우 훌륭하다. 진단서 작성 원칙이 자주 변하지는 않으므로 위 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굳이 반복하여 기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작성 원칙은 간단히 기술하고,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는데 집중하기로 한다.

1.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의료법에서는 이들 문서에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체검안서는 (1) 진료한 적이 없거나, (2) 진료한 적이 있지만, 진료한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그리고 (3)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2. 육안적 확인

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망진단서도 다르지 않다. 다만 의료법에서는 환자를 마지막으로 진료한 시간이 48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그 환자가 퇴원을 한 뒤 예상하였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면 굳이 환자를 다시 진찰하지 않아도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신원의 확인

확인한 대로 쓰면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쓴다. 필요하다면 관련 근거를 진료기록부에 남길 수 있다.

4. 발병일시

생물학적인 발병 시점이 아니라, 그 상태가 의료진에 의하여 확인된 시점을 말한다.

5. 사망일시

사망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에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 사실들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근거를 진료기록부에 남기면 좋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심폐소생술이 종료된 시간을 사망시각으로 기록하면 된다. 의학적으로는 사망하였지만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인공호흡기 등을 부착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의학적인 행위는 아니므로 사망시간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6. 사망원인

사망원인이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질병, 병적 상태 또는 손상'을 말한다. 즉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학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원인을 선행사인(underlying antecedent cause of death)이라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1)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상태를 초래한 질병이나 손상 또는 (2) 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행의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서식의 가장 위에는 직접사인(direct cause of death)을 기재하고, 그 선행원인을 바로 아래 칸에, 다시 그 선행원인을 아래에 차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작성 방법은 사

례들을 통해 익히기로 한다.

7. 사망의 종류 판단과 외인사

사망의 종류를 판단하는 과정에는 법적이고 규범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병사가 확실할 때에만 병사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임상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오류는 외부적인 요인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법의학적으로는 사망에 관여한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을, 그리고 만성적인 요인보다는 급성적인 요인을 더욱 중요하게 본다.

외인사로 판단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는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유족이 원하지 않더라도 부검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경찰 역시 강력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다. 결국 '병사' 진단서를 선호하거나, 심지어 의료진에게 이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망의 과정을 질병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결국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part Ⅱ

실제 사망진단서에서 발견되는 주요 오류 사례들

Ⅱ 실제 사망진단서에서 발견되는 주요 오류 사례들

임상에서 발행되는 사망진단서에서는 여러 종류의 잘못이 발견되곤 한다. 실제 사망진단서의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뒤 이를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개별적으로 설명하였다.

(1) 사망 관련 현상이나 직접사인만 기록하여 선행사인(원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2) 서로 경합하는 사인들을 병렬적으로 기록한 경우
(3) 직접사인과 선행사인 간의 인과관계가 부적절한 경우
(4) 시간 간격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5) 중간에 빈 칸을 두거나 중복되는 진단명을 기입한 경우
(6) 부적절한 진단명을 사용한 경우
(7) 외인사의 추가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8) 약자를 풀이 없이 사용하였거나 오자가 있는 경우
(9) 사망의 원인과 종류가 배치되는 경우
(10) 한 칸에 여러 개의 진단명을 적은 경우

1. 사망 관련 현상이나 직접사인만 기록하여 선행사인(원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사인	심폐정지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미상			
	(다)	(나)의 원인	미상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 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⑫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V]기타 및 불상					

직접사인은 '심폐정지'로, 그 원인은 '미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심폐정지는 사망의 현상일 뿐 특정한 진단명이 아니다. 사망의 원인이 불확실한 경우 직접사인을 '불명'으로 표기하면 된다. 그 아래에는 '미상'을 두 번 표기하였는데, 이렇게 빈칸을 모두 채우려 할 필요는 없다. 심폐정지 외에도 호흡정지, 심정지, 호흡부전, 뇌압상승, 부정맥 등 사망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은 사인으로 적지 않는다. 심부전이나 간부전, 패혈증, 복막염 등은 그 원인을 선행사인에 표기하여야 한다. 종양성 병변의 경우에는 양성인지 악성인지 구분하고, 원발장기나 전이 여부를 알 수 있게 적는 것이 좋다.

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사인	심폐정지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원인불명			
	(다)	(나)의 원인	원인불명			
	(라)	(다)의 원인	원인불명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 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심폐정지'는 사인으로 적지 않는다. 사망 원인을 모른다면 직접사인에 '불명'이라고 한 번만 적으면 충분하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심폐 부전</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두부 손상</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td><td></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 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r><td></td><td colspan="3">사고 종류 [V]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 ] 기타( )</td><td>의도성
여 부</td><td>[ ]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td></tr>
</table>

‘심폐 부전’ 역시 심폐정지와 마찬가지로, 사인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직접사인에는 ‘두부손상’, 그 선행원인에 ‘교통사고’를 적으면 충분하다. 손상이나 사고의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게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과 외인사의 세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교통사고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비의도적 사고로 표시하면 된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저산소성 뇌손상</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td><td></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 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목을 매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사망진단서이다.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되어 있는데, ‘저산소성 뇌손상’의 선행원인이 없어 상황을 알 수 없다. 직접사인에만 ‘목맴’으로 기록하면 충분하다.

2. 서로 경합하는 사인들을 병렬적으로 기록한 경우

<table>
<tr><td>⑩ 사 망 장 소</td><td>장소</td><td colspan="5">[ ] 주택 [V]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td></tr>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심폐정지, 자궁근무력증</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 rowspan="4">1일</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양수폐색전증, 뇌병변추정</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상세불명의 전신경련</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td><td></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특이사항 없음</td><td>수술연월일</td><td>2012년 2월1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한 개의 칸에는 하나의 진단명만 기입해야 한다. 심폐정지는 사망의 기전이므로 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 ‘자궁근무력증, 양수폐색전증, 뇌병변’ 등은 인과관계로 연결되기 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원인들이므로, 의학적으로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추정되는 것을 골라 직접사인에 적는다. ‘뇌병변’은 구체적인 진단명으로 바꾸어야 한다. ‘상세불명의 전신경련’은 진단명이 아닌 증상이므로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

3. 직접사인과 선행사인 간의 인과관계가 부적절한 경우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폐부종</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기존의 심장 판막 기능 부전 악화</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급성 충수염</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류마티스관절염으로 거동 불가능</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급성 충수염</td><td>수술연월일</td><td>2012년 2월5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폐부종’은 원칙적으로 사망원인에 적합한 진단명은 아니다. 이를 전제하고 사용한다고 하여도 ‘폐부종’과 ‘기존의 심장 판막 기능 부전 악화’, ‘급성 충수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다. 급성 충수염이 기존의 심장 판막 기능 부전을 악화시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직접사인은 ‘심부전’, 그 원인은 ‘급성 충수염’으로 기재하고, 그 아래 칸에 기존의 심장 판막 질환을 기록하면 사망의 과정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다. ‘폐부종’은 이 과정에서 동반된 현상 중 하나로 이해하면 된다. 만약 만성적인 심장 판막 기능 부전이 있었지만 사망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면 사망원인에는 ‘급성 충수염’만 기록하고, 심장 판막 질환은 ‘그 밖의 신체상황’에 기록하면 된다.

4. 시간 간격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table>
<tr><td>⑩ 사 망 장 소</td><td>장소</td><td colspan="4">[ ] 주택 [V]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td></tr>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패혈증/패혈성 쇼크</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뇌간손상/의식저하</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대뇌부종</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td><td></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r><td>사고 종류</td><td colspan="2">[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V]기타(알 수 없음)</td><td>의도성 여부</td><td colspan="2">[ ]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td></tr>
</table>

사망한 경과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칸에는 중요한 진단명 하나만 적는다. 즉 직접사인에는 패혈증, 선행사인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적고, 패혈증의 경우 원인균이나 감염 부위를 알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다.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은 대부분의 사망진단서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사망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므로 대략적이라도 기록한다.

<table>
<tr><td rowspan="7" colspan="2">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저혈량성 쇼크</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간열상</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교통사고</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td><td></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r><td></td><td>사고 종류</td><td colspan="3">[V]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 ]기타( )</td><td>의도성 여부</td><td>[ ]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td></tr>
</table>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저혈량성 쇼크’는 사망의 기전이므로 대신 ‘간열상’에 따른 ‘복강내출혈’을 기록하거나, 출혈 부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생략하는 것이 낫다.

5. 중간에 빈 칸을 두거나 중복되는 진단명을 기입한 경우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우심실부전</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폐색전증</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공 란</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공 란</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공 란</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사망원인은 위 칸부터 채우고, 중간에는 빈칸을 두지 않는다. ‘우심실부전’은 사망의 기전이므로 생략하는 것도 좋겠다.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도 기입한다. 한편 ‘폐색전증’은 선행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겠다.

<table>
<tr><td rowspan="7" colspan="2">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심폐정지</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장기손상 및 실혈</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흉부자상</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td><td></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6cm 가량 피부열창 있음</td><td></td><td></td></tr>
<tr><td colspan="2">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r><td></td><td>사고
종류</td><td colspan="3">[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V]기타(자상)</td><td>의도성
여 부</td><td>[ ]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td></tr>
</table>

‘심폐정지’나 ‘장기손상 및 실혈’은 진단명이 아니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고, ‘흉부자창’만 기록하면 충분하다. 자창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면 더욱 좋겠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미 상</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미 상</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약물중독 (농약:그라목손)</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우울증</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r><td>사고
종류</td><td colspan="3">[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 ]기타( )</td><td>의도성
여 부</td><td>[ ]비의도적 사고 [V]자살
[ ]타살 [ ]미상</td></tr>
</table>

'미상'이라는 여지를 남겨 약물중독 이후의 과정을 보충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망원인이 명확하고, 의학적으로 의심되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잘 알려져 있다면 이후의 과정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직접사인에 '그라목손 중독'이라고 기재하면 되겠다. 사망원인의 모든 칸을 채우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은 기재하여야 하겠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미 상</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 rowspan="4">1일</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미 상</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목부위의 자상(약 17cm)</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공 란</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able>

앞서 설명한 사례와 비슷하다. '목 부위의 자상'만 직접사인으로 적으면 된다.

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사인	호흡부전(추정)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상기도 압박(추정)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 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⑫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⑬ 외인사 사항	사고 종류	[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 ] 기타( )	의도성 여 부	[ ]비의도적 사고 [V]자살(추정) [ ]타살 [ ]미상
	사고 발생 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미 상		
	사고 발생 장소	주소	전남 나주시 봉황면 만봉천 인근 야산	
		장소	[ ] 주택 [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V] 기타( )	

목을 매고 사망하였음을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직접사인에 '목맴'이라고 적으면 충분하다. 중간에 빈칸을 두지 않고 위부터 차례로 적는다.

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사인	실혈 쇼크사 추정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위, 식도정맥류 출혈 추정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⑫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V]기타 및 불상				

사망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추정'이라는 단서를 붙여 가능성 있는 원인을 적는 것은 좋지만, 사망의 기전은 적지 않는다. 중간의 빈칸도 남기지 않는다. 직접사인에 '위, 식도정맥류출혈 추정'만 쓰면 충분하다. '위, 식도정맥류'의 선행원인이 있는 경우 확인하여 작성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망의 종류는 병사일 것으로 본다.

<table>
<tr><td rowspan="7" colspan="2">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 colspan="2">심폐부전</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 colspan="2">두부 손상, 흉부 손상</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 colspan="2">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4">(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 colspan="2"></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6">[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r><td></td><td>사고
종류</td><td colspan="3">[V]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 ]기타( )</td><td>의도성
여 부</td><td colspan="2">[ ]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td></tr>
</table>

사망의 원인에 '심폐부전'과 같은 사망의 현상은 적지 않는다. '두부손상, 흉부손상'과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은 중복되는 표현이므로 직접사인에 '두부 및 흉부손상', 선행원인에 '교통사고'라고 기재한다. 발병부터 사망까지 시간과 발생장소도 기재한다. 교통사고는 의도성 여부 중에서 '비의도적 사고'라고 표시한다.

6. 부적절한 진단명을 사용한 경우

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노환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⑫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V]기타 및 불상				

'상세불명의 노환'은 사망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다. 병력이나 최근의 생활을 자세히 알아보면 중요한 감별질환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외상이나 과거력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다른 증상이 없었다면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만, 만약 사인을 선불리 추정하기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외상 등 확인해야 하는 정황이 있다면 '불명'이라고 하는 것이 낫다. 사망 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하였다면 사망의 종류는 '병사'이나, 불명이라고 하였다면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표기한다.

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 부전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저산소성 뇌손상		
	(다)	(나)의 원인	기도 폐쇄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충수돌기염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충수돌기염 수술 후 발생한 작은창자 천공	수술연월일	2012년 7월7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⑫ 사망의 종류	[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실제로는 충수돌기염 수술 후 소장천공, 복막염, 후복막강 농양이 발생하여 사망한 환자였으나, 위 사망진단서에는 이러한 경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사망진단서에는 의사가 판단한 사망의 경과가 잘 드러나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인 하나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그 밖의 신체상황에 기입하여도 된다. 합병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면 합병증과 그 원인을 차례로 기술한다. 이 건의 경우 직접사인은 '복막염', 그 원인은 '소장천공'으로 표기하고 다시 그 원인을 '충수돌기절제술'이라고 적을 수 있겠다. 수술 자체를 사망 원인으로 적는 것에 대해 임상의들은 다소 경계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망진단서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심폐정지</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자세한 것은 미상</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자세한 것은 미상</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구토의 흔적 보이나 자세한
것은 미상</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 ]외인사 [V]기타 및 불상</td></tr>
</table>

사망의 원인으로는 질병이나 손상을 초래한 사고, 외력의 상황을 적는다. '심폐정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칸을 채우기 위해 별다른 정보를 주지 않는 말을 반복해서 적을 필요는 없다.

7. 외인사의 추가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table>
<tr><td colspan="2"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심폐 부전</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두부 손상 및
전신 타박상</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추락</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td><td></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 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r><td rowspan="4">⑬
외인사
사항</td><td>사고
종류</td><td colspan="3">[ ] 운수(교통) [ ] 중독 [V] 추락
[ ] 익사 [ ] 화재 [ ] 기타( )</td><td>의도성
여 부</td><td>[ ]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td></tr>
<tr><td>사고
발생
일시</td><td colspan="5">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미 상</td></tr>
<tr><td rowspan="2">사고
발생
장소</td><td>주소</td><td colspan="4"></td></tr>
<tr><td>장소</td><td colspan="4">[ ] 주택 [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td></tr>
</table>

‘심폐 부전’은 사망 원인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직접사인에는 ‘두부손상’, 그 원인은 ‘추락’으로 기재하고, 외인사의 세부사항, 즉 의도성 여부, 사고발생 장소 및 상황을 기입한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저혈량 쇼크 (추정)</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다발성 골절</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 ]외인사 [V]기타 및 불상</td></tr>
</table>

교통사고로 발생한 흉부손상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한 사례였는데, 위 사망진단서에는 손상의 원인이 기록되지 않았다. 손상의 원인이 교통사고라고 파악되었다면 이를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참고한 진술의 내용과 진술자에 대한 정보를 의무기록에 적어 근거를 확보하여 둔다. ‘다발성 골절’보다는 손상 부위를 파악할 수 있는 ‘흉부손상’이라는 표현이 낫다. ‘저혈량 쇼크’는 사망의 기전이므로 사인으로 적지 않는다.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이므로 사고 종류(운수)와 발생 일시, 장소 등의 세부사항을 기록한다.

8. 약자를 풀이 없이 사용하였거나 오자가 있는 경우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ARDS</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 rowspan="4">3일</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pneumonia</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congenital
fiber-type disproportion</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사망의 원인으로 기록하는 진단명은 약자를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 한글로 적는다. 따라서 직접사인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그 선행원인은 '폐렴'으로 적으면 된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폐렴이 진행되어 나타난 합병증으로 생각한다면 이를 생략하고 직접사인에 '폐렴'만 기록해도 된다. '선천성 섬유형 불균형'은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망진단서에 적지 않는다.

9. 사망의 원인과 종류가 배치되는 경우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급성 심근경색증</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외상성 뇌 실질내 출혈</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두개골 골절</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고혈압</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만약 '급성 심근경색증'이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 실질내 출혈'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고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상적으로 외부적인 손상이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분류하거나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판단에는 사망에 이르는 시간적 경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므로,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을 기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한편 고혈압은 심근경색증의 유발요인으로서 의학적 의미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사망진단서에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table>
<tr><td rowspan="7" colspan="2">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 colspan="2">불명사</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 colspan="2"></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 colspan="2"></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4">(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 colspan="2"></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6">[ ]병사 [ ]외인사 [V]기타 및 불상</td></tr>
<tr><td></td><td>사고
종류</td><td colspan="3">[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V] 익사 [ ] 화재 [ ]기타( )</td><td>의도성
여 부</td><td colspan="2">[ ]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td></tr>
</table>

사인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사고의 종류는 ‘익사’라고 표기하였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익사로 추정된다면 사망의 원인은 ‘익사(추정)’,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표기하고,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망의 원인은 ‘불명’ 혹은 ‘미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표기한다.

⑩ 사 망 장 소	장소	[ ] 주택 [V]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			
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Paraquat 중독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⑫ 사망의 종류	[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급성 호흡부전’은 사망의 기전이므로 적지 않고, ‘파라쿼트 중독’만 직접사인으로 적는다. 약물 혹은 독물에 의한 중독사는 외인사에 해당하므로,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고 적는다.

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사인	미 상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미 상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⑫ 사망의 종류	[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				
사고 종류	[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V]기타( )			의도성 여 부	[ ]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V]미상

사인이 ‘미상’이라면 사망의 종류도 ‘기타 및 불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추정되는 외인이 있다면 이를 직접사인에 기입한다.

10. 한 칸에 여러 개의 진단명을 적은 경우

<table>
<tr><td colspan="2">⑨ 사 망 일 시</td><td colspan="6">2009년 03월 22일 01시 30분 (24시각제에 따름)</td></tr>
<tr><td colspan="2" rowspan="2">⑩ 사 망 장 소</td><td>주소</td><td colspan="5">광주광역시 -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td></tr>
<tr><td>장소</td><td colspan="5">[ ] 주택 [V]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td></tr>
<tr><td colspan="2"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흡인성폐렴 및 패혈증</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 colspan="2"></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외상성 혈흉, 늑골골절, 골반골골절, 요추골</td><td colspan="2"></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교통사고</td><td colspan="2"></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3">교통사고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내과적인 치료 도중 사망한 환자임</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 연월일</td><td colspan="2">2009년 02월09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6">[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r><td rowspan="4">⑬
외인사
사항</td><td>사고
종류</td><td colspan="3">[V]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 ] 기타( )</td><td>의도성
여 부</td><td colspan="2">[ ]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td></tr>
<tr><td>사고
발생
일시</td><td colspan="6">2009년 01월 16 일 07시 30분(24시각제에 따름)</td></tr>
<tr><td rowspan="2">사고
발생
장소</td><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장소</td><td colspan="5">[ ] 주택 [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td></tr>
</table>

사망의 원인은 하나의 칸에 한 가지 진단만 적는다. (나)항에서 여러 손상을 나열하였는데, 이보다는 ‘다발성 손상’ 또는 ‘다발성 골절’이라고 하거나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손상 하나만 적는다. ‘패혈증’이 ‘흡인성 폐렴’의 합병증이라고 생각한다면 ‘패혈증’은 생략하거나, 두 칸으로 나누어 위에는 ‘패혈증’, 아래에는 ‘흡인성 폐렴’이라고 적는다. 수술을 하였다면 그 주요소견도 기술한다.

part Ⅲ

여러 임상 상황에 대한 사망진단서 작성 예시

III 여러 임상 상황에 대한 사망진단서 작성 예시

모든 유형의 사망진단서를 미리 연습해볼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진단서에 자신이 의도한대로 환자의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지 작성자 스스로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환자의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경합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사망진단서에 여러 오류들이 나타나기 쉽다. 일반적으로 사망에 관여한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만성적인 요인보다는 급성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곤 한다.

임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사망진단서의 예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필요한 경우 아래에 해설을 추가하였다.

그룹A. 질병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 사례1. 급성 심근경색증
- 사례2. 뇌내출혈
- 사례3. 병원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
- 사례4.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 사례5. 장폐색으로 인한 복막염
- 사례6. 폐암 수술 후 발생한 객혈
- 사례7. 내시경 시술 후 발생한 췌장염
- 사례8. 간경화증에 따른 식도정맥류 출혈
- 사례9. 간암 파열에 의한 복강내출혈
- 사례10. 전이암에 의한 병적골절 치료 중 발생한 폐색전증
- 사례11. 대동맥박리의 파열

사례12.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사례13. 무릎수술 후 발생한 폐색전증
사례14.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교통사고

그룹B. 외부적인 원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례15. 요양원 입원 중 발생한 경막하출혈
사례16-1. 음식물 흡인에 의한 기도폐색
사례16-2. 장기간 요양 중 발생한 폐렴
사례17. 몸싸움 후 발생한 복강내출혈
사례18. 입원환자의 낙상 및 머리 손상
사례19. 총기 사고
사례20. 일산화탄소 중독
사례21. 익사
사례22. 수면 중 사망한 영아
사례23. 골절 수술 후 발생한 호흡곤란
사례24.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사례25.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
사례26. 농약 음독
사례27. 추락
사례28. 예기손상이 있는 수중시체
사례29. 목맴
사례30. 화재사
사례31. 심하게 부패한 신원불명의 시신

그룹C.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적인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경우

사례32. 욕창에 의한 패혈증
사례33. 몸싸움 후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
사례34. 외상성 뇌출혈 치료 중 발생한 폐렴

그룹A 질병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사례 1 - 14)

1. 급성 심근경색증

15년 전 고혈압, 2년 전 당뇨를 진단받은 48세 여자가 아침부터 윗배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여 13시경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내원 당시 심전도 검사에서는 동성 서맥과 QT 간격의 연장이 확인되었고, 가슴 단순촬영에서는 심장이 비대되어 있었다. 혈액검사에서는 myoglobin이 179 ng/ml로 증가되어 있었고, CK-MB와 troponin-I는 음성이었다.

수액과 위장관운동촉진제, 위산억제제를 투여 받던 중 등에 통증이 나타났다고 하여 14시 30분경 심전도 검사를 다시 시행하였으나 이전과 변화가 없었고, 15시경 시행한 혈중 BNP는 78.9 pg/ml로 정상 범주였다. 환자는 우선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을 투여 받은 뒤 소화기내과로 입원하였고, 증상은 호전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05시 30분경 다시 명치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한 뒤 의식을 잃었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06시 18분경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CPK는 2871 U/L, CK-MB는 240.1 ng/ml, troponin-I는 50 ng/ml으로 증가되어 있었다. 환자는 심폐소생술에 반응하지 않아 08시 01분경 사망 선고를 받았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급성 심근경색증</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19시간</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혈액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였다.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은 처음 증상을 호소한 뒤 사망이 선고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으로 하였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사인은 아니지만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면 ‘그 밖의 신체상황’에 적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급성 심장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임상의들이 있는데, 이는 특정한 질환을 가리키는 진단명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진단이 확실하지 않다면 임상적으로 가장 의심되는 진단명에 ‘추정’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추정 진단임을 나타내면 된다. 사망진단서에 반드시 확정된 진단만을 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뇌내출혈

7년 전 고혈압을 진단받은 45세 남자가 부인과 말다툼 후 집 앞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내원 당시 혈압은 130/87 mmHg, 맥박은 분당 88회, 호흡은 분당 22회, 체온은 36.1℃, 산소포화도는 96%로 측정되었다. 오른쪽 광대부위에 경미한 찰과상이 있었다. 강한 통증을 주어도 움찔거리는 반응만 보였고, 제뇌경직(decerebrate rigidity)이 일어났다. 머리와 목 CT를 촬영한 결과 뇌교의 실질 내 출혈이 확인되었다. 중환자실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내원 10시간 만에 사망하였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뇌내출혈</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10시간</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영상검사로 확인된 '뇌내출혈'을 사인으로 적고,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을 적는다. 출혈의 위치나 상황을 보면 고혈압이 출혈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이다. 고혈압을 (나)항에 선행원인으로 명시할 수도 있는데, 이때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은 7년으로 한다.

3. 병원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

44세 남자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약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반응하지 않아 사망이 선고되었다. 머리와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서 심각한 외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혈액검사나 영상검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보호자에 따르면 환자는 7년 전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평소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였다. 내원 전날 두통이 있어 집에 있던 진통제를 복용하고 잠을 잤는데, 당일 새벽에 입 주변에 토물을 흘린 채 잠을 깨지 않아 가족들이 119에 신고하였다고 하였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뇌출혈(추정)</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1일</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고혈압</td><td>7년</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이 경우 생전에 자신에게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아니므로 시체검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시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심폐소생술이 끝난 뒤 의사가 사망을 선고한 시간을 적는다. 이때 사망 장소는 병원이 된다.

구토는 뇌압이 증가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다는 점에서 사인을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추정하였다. 발병 시간이 확실치 않다면 위와 같이 증상을 호소한 시점으로 간주하거나

‘알 수 없음’이라고 적어도 된다.

이 사례는 주로 보호자인 가족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사인을 판단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신뢰도가 낮거나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남겨 놓으면 나중에 논란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과거력이나 사망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추정 진단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인은 ‘불명’,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에 표시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36세 여자가 방 안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환자는 약 1주일 전부터 두통이 있어 동네 의원에서 소염진통제와 근이완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발견 전날에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두통이 심해졌다고 하였다. 머리 CT와 뇌혈관조영검사에서 앞교통동맥의 뇌동맥류 파열과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으며, 환자는 결국 사망하였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지주막하출혈</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7일</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뇌동맥류 파열</td><td>7일</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5. 장폐색으로 인한 복막염

10년 전 충수절제술, 7년 전 위암수술을 받은 60세 남성이 소변을 보기 어렵고 아랫배가 아파 내원하여 장폐색증을 진단받고 입원하였다. 입원 다음 날부터 복통이 심해지고 38.2℃의 열이 있으면서 영상검사 소견도 악화되어 입원 5일째에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당시 소장이 심하게 늘어나 있었고, 회장으로 추정되는 부위는 유착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괴사되어 있어 이 부위를 15cm 정도 절제하였다. 그러나 수술 중 혈압이 불안정하였고 동공반사가 소실되었으며, 이에 심폐소생술을 하며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같은 날 사망하였다. 조직검사 결과, 절제된 소장에서 괴사와 천공이 확인되었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복막염</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4일</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소장 천공</td><td>4일</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장폐색증</td><td>5일</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위암수술(7년 전)
충수절제술(10년 전)</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소장 팽대, 회장 천공</td><td>수술연월일</td><td>○○년○월○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6. 폐암 수술 후 발생한 객혈

70세 여성이 폐 우상엽에 3A기의 편평세포암종이 있어 폐엽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추가로 받았다. 수술 3개월 후 많은 양의 객혈을 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응급 기관지내시경검사 결과 오른쪽 기관지의 문합부에서 궤양과 출혈이 확인되어 수혈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기관지 궤양 및 출혈</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1일 이내</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폐엽절제술 후 상태</td><td>3개월</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폐 편평세포암종</td><td>3개월</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이 사례처럼 치료 후 합병증이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임상 의사들은 치료에 대한 내용을 사망진단서에 적시하면 마치 과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마도 많은 의사들이 ‘폐엽절제술 후 상태’를 적지 않고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렇게 기술하면 종양 자체에서 출혈이 일어난 상황과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의료과실은 사망진단서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망진단서에는 환자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에 대비하면 된다.

7. 내시경 시술 후 발생한 췌장염

40세 여자가 건강검진에서 췌담관의 종양이 의심되어 입원하였으나, 입원 후 시행된 내시경역행췌담관조영술 결과 총담관낭종으로 진단되었다. 약 5시간 후 배가 아프다고 하여 진통제를 투여하였으나 증상은 계속 악화되었다. 다음날에는 복부의 압통이 동반되었으며, 혈청 amylase와 lipase가 크게 상승하였다. 이후 소변량이 줄고 혈소판 수가 감소하였으며, 대사성 산증이 생기고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다가 1주일 후 사망하였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다발성 장기부전</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7일 이내</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췌장염</td><td>7일</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내시경역행췌담관조영술</td><td>7일</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총담관낭종</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⑬
외인사
사항</td><td>사고
종류</td><td colspan="2">[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V] 기타( )</td><td>의도성
여 부</td><td>[V]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td></tr>
<tr><td>사고
발생
일시</td><td colspan="4">○○○○년 ○○월 ○○일 ○○시 ○○분 이전(24시각제에 따름)</td></tr>
<tr><td rowspan="2">사고
발생
장소</td><td>주소</td><td colspan="3">○○시 ○○구 ○○로 ○○○</td></tr>
<tr><td>장소</td><td colspan="3">[ ] 주택 [V]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td></tr>
</table>

‘다발성 장기부전’은 사망의 기전으로 보기도 하므로. 이 진단서에서 생략해도 된다. 사망 경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포함시켰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이 사례 역시 내시경 시술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면 환자의 사망 과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치료 내용을 언급하더라도 이는 의사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므로, 사망진단서에서는 환자의 사망 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사례는 진단서를 발행하는 의료인의 생각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위 예시에서는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분류하였지만, 임상의사들은 일상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

득력이 있으며, 보호자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납득하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호자들은 의료사고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사망의 종류가 보호자의 인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다양한 의료 상황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오히려 초기에 제3자가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의료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발행한 뒤 경찰에 환자가 사망하였음을 신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망은 병사로 보지 않고 우선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시술 전에 보호자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는 것 역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8. 간경화증에 따른 식도정맥류 출혈

환자는 50세 남자로, 10년 전 B형 간염과 간경화증, 식도정맥류를 진단받은 뒤 지금까지 내시경적 정맥류 결찰술을 8회 시행하였다. 이후 간이식을 기다리던 중 토혈을 하여 입원하였다. 식도정맥류 파열이 의심되어 S-B(Sengstaken-Blakemore) 관을 삽입하고 지혈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내원 5시간 만에 사망을 선고하였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위장관출혈</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5시간</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식도정맥류 파열</td><td>5시간</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간경화증</td><td>10년</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B형 간염</td><td>10년</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9. 간암 파열에 의한 복강내출혈

55세 남자가 복통으로 내원하였다. 특별한 과거력이나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복부가 팽만되어 있었고 저혈압과 빈맥이 있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CT에서는 간의 악성종양으로 추정되는 병변이 파열되어 있었고, 복강내출혈이 확인되었다. 응급처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응급실 내원 3시간 만에 사망하였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간의 악성종양 파열(추정)</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3시간</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경우에 따라 선행원인을 '복강내출혈'로, 직접사인을 '간의 악성종양'으로 기술할 수도 있겠다. 이 사례와 유사하게 간의 악성종양이 발견되었지만 파열과 같은 급성 합병증 없이 말기로 진행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사인에 '간의 악성종양' 내지 '간암'이라고 쓰면 충분하다.

10. 전이암에 의한 병적골절 치료 중 발생한 폐색전증

65세 여자로, 5년 전 유방암을 진단받고 유방절제술과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다. 한 달 전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위에 유방암이 전이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계속 침대에 누워 지내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다. 응급 촬영한 가슴 CT에서 폐동맥의 혈전이 의심되었다. 환자는 내원한지 6시간 뒤 사망하였다.

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사인	폐색전증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6시간
	(나)	(가)의 원인	대퇴골의 병적 골절		1개월
	(다)	(나)의 원인	전이성 유방암		5년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⑫ 사망의 종류	[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11. 대동맥박리의 파열

20년 전 마르팡증후군을 진단받은 뒤 시각장애와 요추의 추간판탈출증 등을 앓아온 44세 남자가 집에서 갑자기 발생한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가슴 CT에서는 상행대동맥의 대동맥박리가 파열되어 있었고, 심장눌림증이 함께 확인되었다.

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사인	심장눌림증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알 수 없음
	(나)	(가)의 원인	대동맥박리의 파열		알 수 없음
	(다)	(나)의 원인	마르판증후군		20년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⑫ 사망의 종류	[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대동맥박리가 파열되고 심장눌림증이 발생한 시점은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시각은 파악되지 않는다. 이 경우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에는 대략적으로 추정되는 시간의 범위를 기록하거나, 예시와 같이 ‘알 수 없음’이라고 하여도 된다.

12.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47세 남자가 복통을 주소로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도착 당시 혈압은 70/40 mmHg, 맥박은 분당 110회, 호흡은 분당 21회, 체온은 36.3℃이었다. 복부단순촬영에서 복강내 공기음영이 보여 응급 개복술을 시행하였고, 십이지장 궤양의 천공과 복막염이 확인되었다. 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나,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2일 만에 사망하였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범발성 복막염</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2일</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십이지장 궤양의 천공</td><td>알 수 없음</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13. 무릎수술 후 발생한 폐색전증

66세 여자가 오른쪽 무릎의 양성 낭종을 제거하기 위해 입원하여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5일째 되던 날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3차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가슴 CT에서 폐동맥의 혈전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심폐소생술에 반응하지 않고 증상이 발생한지 2시간 만에 사망하였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폐색전증</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2시간</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오른쪽 무릎 관절경 수술</td><td>수술연월일</td><td>○○년○월○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14.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교통사고

3년 전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던 66세 남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한 앞차를 추돌하였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은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았다. 환자도 외부적으로 확인되는 손상은 없었지만,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심폐소생술 후 심박동이 회복되었는데, 당시 심전도에서 심근경색증의 소견이 확인되었고 혈액검사에서 심근표지자가 뚜렷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3개월간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였고, 1주일 만에 사망하였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폐렴</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7일</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급성 심근경색증</td><td>3개월</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이 사례와 같이 차량 운전자의 질병이 갑작스럽게 악화되면서 차량에 대한 제어력을 상실하여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한 상태로 발견될 경우, 사고 당시의 주변 상황이나 운전자와 차량의 손상 정도 등을 통하여 사고 혹은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파악한 내용들은 진단서의 작성에 참고할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룹B 외부적인 원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례 15 – 31)

15. 요양원 입원 중 발생한 경막하출혈

환자는 83세 남자로, 10년 전 심장동맥경화로 스텐트 설치술을 받았으며 뇌혈관질환이 있어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파킨슨병과 전립선염도 진단받았다고 하였다.

최근 위궤양이 있어 3주간 입원치료 후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주로 침대에 누워 지냈으나 벽을 짚고 천천히 걸어 다닐 수는 있는 정도였다. 의료진이 알기로 넘어진 적은 없었다고 하였다. 요양원 입소 후 한 달 째 되던 날 스스로 아침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휘청거리며 주저앉으려고 하여 간호사가 부축하여 침대에 앉혔다고 하였다. 당시 혈압은 120/70 mmHg, 맥박은 분당 84회, 체온은 36℃이었다. 이후 잠이 들었는데 오후에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119구급대를 통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혈압은 130/80 mmHg, 맥박은 분당 94회, 체온은 38.4℃이었고 통증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 뒤통수에 2×2 cm 크기의 표피박탈이 있었고 머리 CT에서 오른쪽 대뇌 전반과 왼쪽 측두엽의 경막하출혈이 확인되었으며, 뇌 실질의 부종과 허혈 소견이 동반되어 있었다. 수술하기에는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대증적 치료를 받던 중 3일 만에 사망하였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경막하출혈</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3일</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뇌혈관질환으로 항응고제
복용(10년), 파킨슨병(10년)</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 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⑬
외인사
사항</td><td>사고
종류</td><td colspan="2">[ ] 운수(교통) [ ] 중독 [V] 추락
[ ] 익사 [ ] 화재 [ ] 기타( )</td><td>의도성
여 부</td><td>[V]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td></tr>
<tr><td>사고
발생
일시</td><td colspan="4">○○○○년 ○○월 ○○일 ○○시 ○○분 이전(24시각제에 따름)</td></tr>
<tr><td rowspan="2">사고
발생
장소</td><td>주소</td><td colspan="3">○○시 ○○구 ○○로 ○○○</td></tr>
<tr><td>장소</td><td colspan="3">[ ] 주택 [V]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td></tr>
</table>

경막하출혈이나 경막외출혈의 원인이 질병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외력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그러므로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적지는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진료 당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외력으로 인한 손상이나 당시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경막하출혈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만약 외력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분류하여도 좋다.

16-1. 음식물 흡인에 의한 기도폐색

3년 전부터 요양병원에서 생활한 67세 여자 환자로, 고혈압과 파킨슨병, 초기 치매 증상이 있었다. 혼자서는 걷지 못하여 휠체어를 타고 다녔고, 치아가 없어 음식을 잘 씹지 못하였다. 어느 날 요양보호사가 환자에게 삶은 달걀 한 개를 주었는데, 약 10분 후 입술이 파래진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기도를 흡인하자 달걀 조각이 나왔다.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반응하지 않아 사망을 선고하였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음식물 흡인</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즉시</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고혈압, 파킨슨병, 초기 치매</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 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⑬
외인사
사항</td><td>사고
종류</td><td colspan="2">[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V] 기타(음식물흡인)</td><td>의도성
여 부</td><td>[V]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td></tr>
<tr><td>사고
발생
일시</td><td colspan="4">○○○○년 ○○월 ○○일 ○○시 ○○분 이전(24시각제에 따름)</td></tr>
<tr><td rowspan="2">사고
발생
장소</td><td>주소</td><td colspan="3">○○시 ○○구 ○○로 ○○○</td></tr>
<tr><td>장소</td><td colspan="3">[ ] 주택 [V]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td></tr>
</table>

신경계 또는 소화기계의 일부 질환이나 손상은 병적인 연하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환자들은 음식물을 흡인하기 쉬워 기도폐색이나 흡인성 폐렴을 반복적으로 겪을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들 상태와 연하곤란 또는 음식물 흡인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그 상태를 음식물 흡인의 선행원인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때 선행원인이 내부적인 질환이라면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사례에서도 환자는 여러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 질환이 음식물 흡인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잘 씹지 못하여 음식물을 흡인하게 되는 일이 일상적인 노화의 범주를 크게 넘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은 사망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분류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사례16-2와 비교하여 보자.

16-2. 장기간 요양 중 발생한 폐렴

75세 남자가 교통사고 후 머리 손상을 받아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다. 3개월 동안 보존적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퇴원하였다.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전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환자는 약간의 사지마비가 남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였지만 별다른 합병증은 없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1년 후 폐렴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으로 이어지면서 3일 뒤 사망하였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패혈증</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3일 이내</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폐렴</td><td>3일</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외상성 뇌출혈(1년 3개월 전)</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 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V]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교통사고 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사고로 인한 손상과 장애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일반적인 병원 혹은 요양기관 내 폐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원인이나 상황에 따라, 감염성 질환에서도 선행원인을 기록해야 하거나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례32를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다.

'패혈증'의 경우, 각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를 보는 시각에 따라 이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감염성 질환에 의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환자의 상태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기록하더라도 틀린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패혈증의 원인이 된 감염성 질환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사례에서 '폐렴'에 대한 언급 없이 '패혈증'만 기록하였다면 잘못된 사망진단서가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오류를 자주 볼 수 있다.

17. 몸싸움 후 발생한 복강내출혈

59세 남자가 회식 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상대방에게 배를 걷어차인 후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신체검진이나 복부 CT 등의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귀가하려 하였으나, 의식이 흐려져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다. 다시 촬영한 복부 CT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되어 응급 개복술을 시행하였으며, 소장과 장간막이 파열되어 있었다.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3시간 만에 사망하였다.

<table>
<tr><td rowspan="7" colspan="2">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복부 손상</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3시간</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소장과 장간막의 파열, 복강내출혈</td><td>수술 연월일</td><td>○○년 ○월○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r><td rowspan="4">⑬ 외인사 사항</td><td>사고 종류</td><td colspan="3">[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V] 기타(폭행)</td><td>의도성 여 부</td><td>[ ]비의도적 사고 [ ]자살
[V]타살 [ ]미상</td></tr>
<tr><td>사고 발생 일시</td><td colspan="5">○○○○년 ○○월 ○○일 ○○시 ○○분 이전(24시각제에 따름)</td></tr>
<tr><td rowspan="2">사고 발생 장소</td><td>주소</td><td colspan="4">○○시 ○○구 ○○로 ○○○</td></tr>
<tr><td>장소</td><td colspan="4">[ ] 주택 [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V]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td></tr>
</table>

18. 입원환자의 낙상 및 머리 손상

05시경 간호사가 회진하던 중 ‘쿵’ 소리를 듣고 82세 여자 환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머리 CT에서 오른쪽 두정골과 후두골에 골절선이 관찰되었고, 왼쪽 대뇌 전반의 경막하출혈과 왼쪽 전두엽과 측두엽 바닥의 좌상이 확인되었으며, 대뇌의 중간선이 오른쪽으로 밀려나 있었다. 응급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7시경 사망하였다.

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사인	머리 손상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12시간
	(나)	(가)의 원인	낙상		12시간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경막하출혈	수술 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⑫ 사망의 종류	[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				

⑬ 외인사 사항	사고 종류	[ ] 운수(교통) [ ] 중독 [V] 추락 [ ] 익사 [ ] 화재 [ ] 기타( )		의도성 여 부	[V]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
	사고 발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이전(24시각제에 따름)			
	사고 발생 장소	주소	○○시 ○○구 ○○로 ○○○		
		장소	[ ] 주택 [V]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		

19. 총기 사고

40세 남자가 총기 사고로 병원에 실려 왔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가슴과 오른팔에서 총창이 한 개씩 발견되었는데, 가슴에서는 심장을 관통하였다. 오른팔에서는 뼈나 주요 동맥의 손상 없이 근육층이 관통되어 있었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가슴 손상(심장의 총창)</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즉시</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오른팔의 총창</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⑬ 외인사 사항</td><td>사고 종류</td><td colspan="2">[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V] 기타(총기사고)</td><td>의도성 여부</td><td>[ ]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V]미상</td></tr>
<tr><td>사고 발생 일시</td><td colspan="4">○○○○년 ○○월 ○○일 ○○시 ○○분 이전(24시각제에 따름)</td></tr>
<tr><td rowspan="2">사고 발생 장소</td><td>주소</td><td colspan="3">○○시 ○○구 ○○로 ○○○</td></tr>
<tr><td>장소</td><td colspan="3">[ ] 주택 [V]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td></tr>
</table>

이 사례에서는 사망에 중요하게 작용한 손상 부위를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만약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여러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들을 함께 기록하여도 된다. 예를 들어 심장과 뇌에 총창이 있었다면 '가슴과 머리 손상' 내지 '심장과 뇌의 총창'이라고 적으면 된다. 개별적으로는 사인이 되기에 부족해보이지만 손상의 수가 많아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손상이 발생한 부위들을 함께 적어도 된다.

20. 일산화탄소 중독

23세 여자가 자취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등에서 선홍색 시반이 관찰되었다. 경찰관에 따르면, 시신 옆에서 타고 남은 번개탄이 함께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는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농도가 70%로 측정되었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일산화탄소 중독</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알 수 없음</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 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⑬ 외인사 사항</td><td>사고 종류</td><td colspan="2">[ ] 운수(교통) [V]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 ] 기타( )</td><td>의도성 여 부</td><td>[ ]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V]미상</td></tr>
<tr><td>사고 발생 일시</td><td colspan="4">○○○○년 ○○월 ○○일 ○○시 ○○분 이전(24시각제에 따름)</td></tr>
<tr><td rowspan="2">사고 발생 장소</td><td>주소</td><td colspan="3">○○시 ○○구 ○○로 ○○○</td></tr>
<tr><td>장소</td><td colspan="3">[V] 주택 [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td></tr>
</table>

21. 익사

유서를 남기고 가출한 43세 남자가 마포대교 남단의 한강에서 표류하는 상태로 발견되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심폐소생술을 위해 가슴을 압박하자 코와 입에서 끈적끈적한 잔거품이 다량 흘러나왔다.

<table>
<tr><td colspan="2"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 colspan="2">익사 (추정)</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알 수 없음</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 colspan="2"></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 colspan="2"></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4">(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 colspan="2"></td><td>수술 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6">[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r><td rowspan="4">⑬
외인사
사항</td><td>사고
종류</td><td colspan="3">[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V] 익사 [ ] 화재 [ ] 기타( )</td><td>의도성
여 부</td><td colspan="2">[ ]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V]미상</td></tr>
<tr><td>사고
발생
일시</td><td colspan="6">○○○○년 ○○월 ○○일 ○○시 ○○분 이전(24시각제에 따름)</td></tr>
<tr><td rowspan="2">사고
발생
장소</td><td>주소</td><td colspan="5">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교 남단 한강 수중</td></tr>
<tr><td>장소</td><td colspan="5">[ ] 주택 [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V] 기타(한강)</td></tr>
</table>

수중시체는 단순히 물속에서 발견된 시신을 말한다. 이들이 익사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물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생활반응을 확인해야 하는데, 특히 코와 입에서 관찰되는 흰색의 미세한 거품은 익사체의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특이적인 소견이다. 이러한 거품은 외부로부터 액체를 흡입하여 자극된 기도점막이 분비하는 점액에 물과 공기가 경련성 호흡운동에 의해 격렬하게 섞이면서 형성된다. 즉 살아있는 상태로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근거가 된다.

22. 수면 중 사망한 영아

만삭에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4개월 된 여아로, 특별한 과거력은 없었다. 3일 전 콧물감기가 있어 소아과 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이고 있었으며, 평소처럼 모유수유를 한 뒤 아기 침대에 재웠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바로 누운 자세로 숨을 쉬지 않고 있어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불명</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알 수 없음</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 ]외인사 [V]기타 및 불상</td></tr>
</table>

영아급사증후군을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부검 등의 철저한 사후 검사를 통해 다른 원인을 배제한 뒤 진단하여야 한다. 이 사례의 경우 월령이나 수면 자세 등 다소 전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하다. 진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사체검안서에는 ‘불명’으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다.

23. 골절 수술 후 발생한 호흡곤란

30세 남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합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얼굴과 양팔에 찰과상이 있었고, 왼쪽 대퇴골이 골절되어 이에 대해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2일째 되던 날 갑자기 청색증과 호흡곤란이 나타나 기관삽관 후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table>
<tr><td rowspan="7" colspan="2">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지방색전증 (추정)</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2-3일</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왼쪽 대퇴골 골절</td><td>3일</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교통사고(보행자손상)</td><td>3일</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r><td rowspan="4">⑬
외인사
사항</td><td>사고
종류</td><td colspan="3">[V]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 ] 기타( )</td><td>의도성
여 부</td><td>[V]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td></tr>
<tr><td>사고
발생
일시</td><td colspan="5">○○○○년 ○○월 ○○일 ○○시 ○○분 이전(24시각제에 따름)</td></tr>
<tr><td rowspan="2">사고
발생
장소</td><td>주소</td><td colspan="4">○○시 ○○구 ○○로 ○○○</td></tr>
<tr><td>장소</td><td colspan="4">[ ] 주택 [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V]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td></tr>
</table>

24.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27세 남자가 술집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실랑이 중 상대방에게 왼쪽 얼굴을 맞아 머리가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간 뒤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119구급대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인근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머리 CT에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으며, 뇌혈관조영술 결과 왼쪽 척추동맥이 파열되어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외상성 지주막하출혈</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3일</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폭행</td><td>3일</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 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⑬ 외인사 사항</td><td>사고 종류</td><td colspan="2">[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V] 기타(폭행)</td><td>의도성 여 부</td><td>[ ]비의도적 사고 [ ]자살
[V]타살 [ ]미상</td></tr>
<tr><td>사고 발생 일시</td><td colspan="4">○○○○년 ○○월 ○○일 ○○시 ○○분 이전(24시각제에 따름)</td></tr>
<tr><td rowspan="2">사고 발생 장소</td><td>주소</td><td colspan="3">○○시 ○○구 ○○로 ○○○</td></tr>
<tr><td>장소</td><td colspan="3">[ ] 주택 [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V]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td></tr>
</table>

25.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

50세 여자가 거주지에서 내연관계인 남성과 돈 문제로 다투던 중 머리와 얼굴을 망치로 수차례 맞고 사망하였다. 가해자인 남성은 자수하였고, 현장에서는 혈액이 묻은 망치가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는 원형 또는 반원형의 열창이 여러 개 관찰되었는데, 이들의 지름은 서로 비슷하였다. 열창 안쪽에는 함몰 골절이 만져졌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머리의 둔기 손상</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즉시</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폭행</td><td>즉시</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 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⑬
외인사
사항</td><td>사고
종류</td><td colspan="2">[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V] 기타(폭행)</td><td>의도성
여 부</td><td>[ ]비의도적 사고 [ ]자살
[V]타살 [ ]미상</td></tr>
<tr><td>사고
발생
일시</td><td colspan="4">○○○○년 ○○월 ○○일 ○○시 ○○분 이전(24시각제에 따름)</td></tr>
<tr><td rowspan="2">사고
발생
장소</td><td>주소</td><td colspan="3">○○시 ○○구 ○○로 ○○○</td></tr>
<tr><td>장소</td><td colspan="3">[V] 주택 [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td></tr>
</table>

26. 농약 음독

2년 전 발생한 뇌졸중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70세 남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입술과 베개에 녹색 액체가 묻어 있었고, 침대 옆 책상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먼저 간다'라고 적힌 유서와 내용물이 반쯤 남은 파라쿼트 병이 발견되었다. 최근 신병을 비관하며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하였다.

<table>
<tr><td colspan="2"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파라쿼트 중독</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즉시</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 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r><td rowspan="4">⑬
외인사
사항</td><td>사고
종류</td><td colspan="3">[ ] 운수(교통) [V]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 ] 기타( )</td><td>의도성
여 부</td><td>[ ]비의도적 사고 [V]자살
[ ]타살 [ ]미상</td></tr>
<tr><td>사고
발생
일시</td><td colspan="5">○○○○년 ○○월 ○○일 ○○시 ○○분 이전(24시각제에 따름)</td></tr>
<tr><td rowspan="2">사고
발생
장소</td><td>주소</td><td colspan="4">○○시 ○○구 ○○로 ○○○</td></tr>
<tr><td>장소</td><td colspan="4">[V] 주택 [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td></tr>
</table>

27. 추락

50세 남자가 건물 공사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1시간 정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반응하지 않아 사망을 선고하였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머리와 얼굴뼈, 경추, 흉추, 골반뼈, 갈비뼈 등에 다발성 골절이 있었고, 흉강과 복강에도 출혈이 확인되었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다발성 손상</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1시간</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추락</td><td>1시간</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 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r><td rowspan="4">⑬ 외인사 사항</td><td>사고 종류</td><td colspan="2">[ ] 운수(교통) [ ] 중독 [V] 추락
[ ] 익사 [ ] 화재 [ ] 기타( )</td><td>의도성 여 부</td><td>[V]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td></tr>
<tr><td>사고 발생 일시</td><td colspan="4">○○○○년 ○○월 ○○일 ○○시 ○○분 이전(24시각제에 따름)</td></tr>
<tr><td rowspan="2">사고 발생 장소</td><td>주소</td><td colspan="3">○○시 ○○구 ○○로 ○○○</td></tr>
<tr><td>장소</td><td colspan="3">[ ] 주택 [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V]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td></tr>
</table>

이 사례와 같이 심각한 손상이 많아 ‘다발성 손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선택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다. 한편, 외인사에서 의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사례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의도성 여부는 ‘미상’으로 표시하여도 좋다.

28. 예기손상이 있는 수중시체

저수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양쪽 손은 뒤로 묶여있고 얼굴은 청테이프로 감겨있는 상태였다. 가슴과 등에서는 여러 개의 자창이 확인되었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가슴 자창 (추정)</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알 수 없음</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 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⑬ 외인사 사항</td><td>사고 종류</td><td colspan="2">[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V] 기타( )</td><td>의도성 여부</td><td>[ ]비의도적 사고 [ ]자살
[V]타살 [ ]미상</td></tr>
<tr><td>사고 발생 일시</td><td colspan="4"><s>년 월 일 시 분 (24시각제에 따름)</s> 미 상</td></tr>
<tr><td rowspan="2">사고 발생 장소</td><td>주소</td><td colspan="3">○○시 ○○구 ○○동</td></tr>
<tr><td>장소</td><td colspan="3">[ ] 주택 [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V] 기타(○○저수지)</td></tr>
</table>

29. 목맴

30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 치료를 받아왔고 3년 전에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81세 남자가 화장실 샤워커튼봉에 노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채 귀가한 아내에게 발견되었다. 최근 건강이 악화되자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였다. 끈자국은 목 앞에서 뒤로 당겨지는 고리형태였으며, 오른쪽 목덜미에 가장 높게 남아있었다. 신체 다른 부위에서는 별다른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tr><td colspan="2"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목맴</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즉시</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 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r><td rowspan="4">⑬
외인사 사항</td><td>사고 종류</td><td colspan="3">[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V] 기타(목맴)</td><td>의도성 여 부</td><td>[ ]비의도적 사고 [V]자살
[ ]타살 [ ]미상</td></tr>
<tr><td>사고 발생 일시</td><td colspan="5">○○○○년 ○○월 ○○일 ○○시 ○○분 이전(24시각제에 따름)</td></tr>
<tr><td rowspan="2">사고 발생 장소</td><td>주소</td><td colspan="4">○○시 ○○구 ○○로 ○○○</td></tr>
<tr><td>장소</td><td colspan="4">[V] 주택 [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td></tr>
</table>

넓은 의미의 질식은 외부 공기가 체내로 흡입된 뒤 세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과정 중 어느 단계에 이상이 생겨 호흡에 장애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 중 법의학에서 말하는 질식사는 경부압박, 비구폐색, 기도폐색, 흉복부 압박 등으로 인한 기계적 질식사(death due to mechanical asphyxia)를 일컫는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는 목맴(의사)과 끈조름(교사), 손조름(액사)으로 나눌 수 있다. 목맴은 목에 감은 끈의 양쪽 또는 한쪽 끝을 현수점에 고정한 뒤 자신의 체중으로 목을 압박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끈조름은 목에 감긴 끈에 자기 체중 이외의 힘, 즉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외력이나 다른 물체의 운동력이 가해져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손조름은 목을 사람의 손으로 압박하여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스스로 할 수 없는 행동이므로 액살(縊殺)이라고도 한다.

30. 화재사

47세 여성이 원인 불명의 화재를 진압하는 도중 구조되었다. 응급실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나 심폐소생술로 심장박동이 회복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일 후 결국 사망하였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은 81%였으며, 머리와 목, 몸통, 다리에서 3도 화상이 확인되었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화재사</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2일</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 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⑬
외인사
사항</td><td>사고
종류</td><td colspan="2">[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V] 화재 [ ] 기타( )</td><td>의도성
여 부</td><td>[V]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td></tr>
<tr><td>사고
발생
일시</td><td colspan="4">○○○○년 ○○월 ○○일 ○○시 ○○분 이전(24시각제에 따름)</td></tr>
<tr><td rowspan="2">사고
발생
장소</td><td>주소</td><td colspan="3">○○시 ○○구 ○○로 ○○○</td></tr>
<tr><td>장소</td><td colspan="3">[V] 주택 [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td></tr>
</table>

화재사(death due to fire)는 화재로 인한 모든 사망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즉 일산화탄소나 유독가스의 흡입으로 인한 중독, 연소에 의한 산소결핍, 고온의 공기나 물체, 화염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화염 흡입으로 인한 기도부종과 폐색, 화염에 의한 원발성 쇼크 등이 모두 화재사에 해당한다.

31. 심하게 부패한 신원불명의 시신

야산의 텐트 안에서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한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은 신문지 위에 누워 있었고, 텐트 안에는 신발과 옷가지, 빈 소주병 등이 있었다. 전신에 걸쳐 부패로 인한 변화가 관찰되었지만, 검안에서도 손상 등의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불명</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알 수 없음</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td><td></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 ]외인사 [V]기타 및 불상</td></tr>
</table>

이러한 경우에는 사인뿐만 아니라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룹C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적인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경우 (사례 32 – 34)

32. 욕창에 의한 패혈증

5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80세 남자로, 배우자의 간호를 받으며 주로 집안에서 지내고 있었다. 2주 전부터 엉덩이와 다리의 욕창이 심해졌으나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 가지 않았다. 갑자기 의식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이 나타나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배양 검사에서는 Acinetobacter baumannii가 검출되었다고 하였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패혈증</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즉시</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욕창</td><td>2주</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하반신 마비</td><td>5년</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교통사고</td><td>5년</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able>

이 사례에서 의학적인 사망의 원인을 판단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망의 종류는 사망의 법적인 측면을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사망의 종류를 대부분 '병사'로 보는 반면 환자 측은 '외인사'를 주장하여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 누워서 지내는 환자들은 폐렴이나 욕창 같은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기 쉬우며, 심한 경우 이로 인해 사망하기도 한다. 사고나 외상으로 인해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면 그 책임이 사고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고가 책임

져야 할 악결과의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사고의 책임이 무한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계를 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1) 사고와 사망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과 2) 증상의 고정과 그 지속기간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 사건에서의 관련성을 다르게 판단하여야 사고의 책임을 과장하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즉 사고 후 나타난 증상들의 회복 또는 악화 속도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이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새로운 합병증이 생기거나 사망하였다면, 사고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은 매우 낮거나 단절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의학적 지식과 더불어 법적인 관점과 다양한 경험을 필요로 한다.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견과 그 근거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사망진단서는 '기타 및 불상'으로 발행하여 다른 전문가가 개입할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 좋다.

33. 몸싸움 후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

4년 전 협심증을 진단받은 46세 남자가 술에 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는 등 몸싸움을 벌이고 나서 쓰러졌다.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심박동과 호흡은 회복되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얼굴에 생채기와 멍이 몇 군데 남은 것 외에 별다른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심장동맥의 협착이 발견되어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였지만, 심실세동이 반복되었다. 이후 저산소뇌병증에 의한 간질지속증과 흡인폐렴 등이 동반되었으며, 결국 입원 13일 만에 사망하였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흡인폐렴</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2-3일</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급성 심근경색증</td><td>4년</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td><td></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able>

치명적인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을 위와 같이 적고 이를 근거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적는 의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심정지에 앞서 발생한 몸싸움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이 사례의 사망진단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사례처럼, 외력이 가해진 뒤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때 외력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사망의 종류는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외력이 질병의 악화와 발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선행원인으로 기록하고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분류하여야 한다. 외력의 역할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면 위와 같이 이를 기록하지 않고 '병사'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문제는 외력의 역할에 대한 판단이 의학적 지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급성적인 요인을 만성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을 내부적인 요인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규범적인 원칙이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의학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외력을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해야 할 수도 있다. 모든 의사들이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확신이 없다면 위 사례32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환자 측에 설명한 뒤 사망진단서는 '기타 및 불상'으로 발행하여 다른 전문가가 개입할 여지를 남겨 놓으면 된다.

34. 외상성 뇌출혈 치료 중 발생한 폐렴

60세 남자가 술을 마신 뒤 집 앞 계단 아래쪽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되었다. 머리 CT에서 대뇌 오른쪽을 중심으로 경막하출혈이 확인되었다.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고, 입원 5일째에 발열이 있었으며, 가슴 X-ray에서 폐렴이 확인되었다. 2일 뒤 결국 사망하였다.

<table>
<tr><td rowspan="7">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td><td>(가)</td><td>직접사인</td><td>폐렴</td><td rowspan="4">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td><td>2일</td></tr>
<tr><td>(나)</td><td>(가)의 원인</td><td>외상성 경막하출혈</td><td>7일</td></tr>
<tr><td>(다)</td><td>(나)의 원인</td><td>낙상</td><td>7일</td></tr>
<tr><td>(라)</td><td>(다)의 원인</td><td></td><td></td></tr>
<tr><td colspan="3">(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수술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수술 연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해부의사의 주요소견</td><td></td><td></td><td></td></tr>
<tr><td>⑫ 사망의 종류</td><td colspan="5">[ ]병사 [V]외인사 [ ]기타 및 불상</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⑬
외인사
사항</td><td>사고
종류</td><td colspan="2">[ ] 운수(교통) [ ] 중독 [V] 추락
[ ] 익사 [ ] 화재 [ ] 기타( )</td><td>의도성
여 부</td><td>[V]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td></tr>
<tr><td>사고
발생
일시</td><td colspan="4">○○○○년 ○○월 ○○일 ○○시 ○○분 이전(24시각제에 따름)</td></tr>
<tr><td rowspan="2">사고
발생
장소</td><td>주소</td><td colspan="3">○○시 ○○구 ○○로 ○○○</td></tr>
<tr><td>장소</td><td colspan="3">[V] 주택 [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td></tr>
</table>

사망진단서 사례집

의협간행물등록번호 201803-MA394-514

발 행 일 2018년 4월
발 행 인 대한의사협회
발 행 처 대한의사협회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7, 8층
인 쇄 경성문화사 02-786-2999